



제418회국회(정기회)
제7차기획재정위원회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김영환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4755호)

2024. 11.

기 획 재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이정은

목 차

I . 개요	1
II . 주요 내용별 검토	3
1. 세무사의 직무 범위 확대(김영환의원안)	3
2. 세무법인 등 소속 직원이 되고자 하는 경우 세무사등록부 등록 의무화(김영환의원안)	11
3. 한국세무사회의 세무사 작성 서류에 대한 감리(김영환의원안) ...	13
4. 공공기관과 공익법인의 재정지출 등 관리를 위한 조사등 업무의 위탁(김영환의원안, 임광현의원안)	15
5. 무자격자의 세무대리 업무 취급 오인 광고 금지(김영환의원안) ...	18
6. 불법 세무대리 소개·알선에 대한 법정형 상향 (김영환의원안) ...	20

I. 개요

1. 김영환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4755호)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김영환의원 등 23인
- (2) 제 안 일 : 2024. 10. 17.
- (3) 회 부 일 : 2024. 10. 18.

나. 제안이유

세무사는 공공성을 지닌 세무전문가로서 납세자 권익보호와 성실납세에 이바지하는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세무사 제도 선진화와 세무대리 질서 확립을 위한 세무사법 개정이 필요함.

납세자 권익을 폭넓게 구제할 수 있도록 준조세인 부담금에 대한 행정심판 대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실제 세무사의 직무수행을 반영하여 기업의 재무상태 진단 업무 규정을 보완하고, 세무사 자격을 취득한 자가 세무법인 또는 세무사무소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세무사로 등록하여 의무와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하며, 한국세무사회가 회원업무에 대한 감리를 수행하여 공공성 있는 감독기관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세금낭비를 막고 예산지출 투명성 강화를 위해 공공성있는 세무전문가인 세무사가 조세 및 보조금 등 세출의 적정성을 검증할 수 있도록 하고, 세무대리 소개·알선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다. 주요내용

- 가. 세무사의 직무를 실제 직무수행 등 현실에 맞게 명확히 규정하고, 준조세인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3조에 따른 부담금에 대한 행정심판청구의 대리업무를 세무사가 수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 제1항제1호·제3호 및 제2항).
- 나. 세무사자격자의 세무법인·세무사무소 근무 시 세무사등록을 의무화함(안 제6조제1항).
- 다. 회원업무에 대한 한국세무사회의 감리 근거규정을 마련함(안 제18조제5항 신설).
- 라. 세금낭비를 막고 예산지출 투명성 강화를 위해 세출의 적정성을 검증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의3제3항 신설).
- 마. 무자격자는 세무대리 업무를 취급한다고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할 수 없도록 함(안 제20조제3항).
- 바. 세무대리 소개·알선 행위의 처벌을 강화함(안 제22조제1항제3호).

II. 주요 내용별 검토

1. 세무사의 직무 범위 확대(김영환의원안)

현행	개정안
□ 세무사의 직무(제2조) ○ 세무사는 납세자 등의 위임을 받아 다음 각 호의 행위 또는 <u>업무(이하 “세무대리”라 함)</u>를 수행하는 것을 그 직무로 함 - 조세에 관한 신고·신청·청구(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포함한다) 등의 대리(「<u>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u>」에 따른 개발부담금에 대한 행정심판청구의 대리를 포함) - 세무조정계산서와 그 밖의 세무 관련 서류의 작성 - <u>조세에 관한 신고를 위한 장부 작성의 대행</u> - 세무관서의 조사 또는 처분 등과 관련된 납세자 의견진술의 대리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 및 단독주택가격·공동주택가격의 공시에 관한 이의신청의 대리 등 ○ <신설>	□ 세무사의 직무 범위 확대 ○ 세무사는 납세자 등의 위임을 받아 다음 각 호의 행위 또는 <u>업무를</u> 수행하는 것을 그 직무로 함 - 조세에 관한 신고·신청·청구(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포함한다) 등의 대리(「<u>부담금관리 기본법</u>」 제3조에 따라 설치된 부담금에 대한 행정심판청구의 대리를 포함) - (현행과 같음) - <u>조세에 관한 신고·공시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부 작성 대행 및 진단</u>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세무사가 다른 법령에 따라 수행하는 업무는 세무사의 직무로 함

* 김영환의원안 2024. 10. 17. 발의(의안번호 4755)

□ 개정안은 세무사의 직무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으로서,

현행의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에 대한

행정심판청구의 대리 업무에 더하여, 「부담금관리 기본법」에 따른 부담금 전체에 대한 행정심판청구의 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현행 ‘조세에 관한 신고를 위한 장부 작성의 대행’으로 규정된 부분을 ‘조세에 관한 신고·공시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부 작성 대행 및 진단’으로 규정하려는 것임.

또한, 세무사가 다른 법령에 따라 수행하는 업무를 이 법에 따른 세무사의 직무로 규정하면서, ‘세무대리’라는 약칭은 세무사의 직무를 모두 포괄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를 삭제하려는 것임.

가. 개 요

□ 현행법 제2조는 세무사의 직무로서, 조세에 관한 신고·신청·청구(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포함) 등의 대리(「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에 대한 행정심판청구의 대리를 포함), 세무조정계산서와 그 밖의 세무 관련 서류의 작성, 조세에 관한 신고를 위한 장부 작성의 대행, 조세에 관한 상담 또는 자문 등 법에서 열거한 아래의 9가지 사항을 세무대리 업무로 규정하고,

같은 법 제20조¹⁾에서 세무사 등록을 한 사람과 변호사의 직무로서

1) 「세무사법」

제20조(업무의 제한 등) ① 제6조에 따른 등록을 한 사람이 아니면 세무대리를 할 수 없다. 다만, 「변호사법」 제3조에 따라 변호사의 직무로서 행하는 경우와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2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행하는 사람, 공인회계사 세무대리업무등록부 혹은 변호사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한 사람(이하 “세무사등”이라 함)이 아니면 동 세무대리 업무를 할 수 없도록 하면서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이는 「세무사법」 제2조에 열거된 직무는 세무사등만이 수행할 수 있는 ‘배타적 고유업무’가 됨을 의미함.

따라서, 제2조의 직무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안에 대하여는 직무 범위 확대의 적절성에 대한 심사 외에도 현재 해당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관련 직역단체의 의견을 함께 고려한 논의가 필요할 것임.

[현행법 제2조에 따른 세무사의 직무]

1. 조세에 관한 신고·신청·청구(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포함한다) 등의 대리(「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 부담금에 대한 행정심판청구의 대리를 포함한다)
2. 세무조정계산서와 그 밖의 세무 관련 서류의 작성
3. 조세에 관한 신고를 위한 장부 작성의 대행
4. 조세에 관한 상담 또는 자문
5. 세무관서의 조사 또는 처분 등과 관련된 납세자 의견진술의 대리
6.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 및 단독주택가격·공동주택가격의 공시에 관한 이의신청의 대리
7. 해당 세무사가 작성한 조세에 관한 신고서류의 확인. 다만, 신고서류를 납세자가 직접 작성하였거나 신고서류를 작성한 세무사가 휴업하거나 폐업하여 이를 확인할 수 없으면 그 납세자의 세무 조정이나 장부 작성의 대행 또는 자문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세무사가 확인할 수 있다.
8.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성실신고에 관한 확인
9. 그 밖에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행위 또는 업무에 딸린 업무

1. 세무사 자격이 없으면서 세무대리를 한 자

나. 부담금 전체에 대한 행정심판청구의 대리권 부여

- 현행 「행정심판법」 제18조²⁾에서는 행정심판 대리인으로 ‘청구인의 배우자 또는 사촌 이내의 혈족, 법인인 경우 임직원, 변호사, 다른 법률에 따라 심판청구를 대리할 수 있는 자’ 등을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통상적인 행정심판청구 대리는 변호사 등이 수행하고 있고, 부담금 중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담금에 대한 행정심판의 경우에는 「세무사법」 제2조제1호에 따라 세무사도 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음.

한편, 현재 「부담금관리 기본법」에 따른 부담금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개발부담금 등을 포함하여 96종류가 있음.

- 부담금 전체에 대하여 세무사가 행정심판청구 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음.

첫째, 부담금은 비록 세금은 아니지만, 법률 규정에 따라 국민에게 금전납부 의무를 부여한다는 점에서 준조세적 성격이 있으므로 조

2) 「행정심판법」

제18조(대리인의 선임) ① 청구인은 법정대리인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1. 청구인의 배우자, 청구인 또는 배우자의 사촌 이내의 혈족
2. 청구인이 법인이거나 제14조에 따른 청구인 능력이 있는 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인 경우 그 소속 임직원
3. 변호사
4. 다른 법률에 따라 심판청구를 대리할 수 있는 자
5. 그 밖에 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자

세에 관한 전문가인 세무사가 조력할 수 있는 분야라는 것임³⁾.

둘째, 부담금 납부자의 입장에서는 심판대리인에 관한 선택의 폭이 확대되고,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심판대리를 맡길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 다만, 개정안에 대하여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는 개발부담금의 경우, 다른 부담금과는 달리 수익자에 대한 대가성이 없고 그 결정 및 부과·징수절차가 「국세기본법」·「국세징수법」을 준용하는 등 실질적으로 조세와 유사한 성격을 지니고 있지만, 개발부담금과 성격이 다른 대다수의 부담금(예시: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수익자부담금, 약사법 제86조의2에 따른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부담금 등)에 대한 행정심판청구 대리 업무까지 세무사의 직무에 포함시키는 것은 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음.

대한변호사협회에서는 쟁송대리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한 세무사의 업무영역을 확대하는 것은 법조유사직역을 통폐합하여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법조인력 체계를 만들고자 하는 법학전문대학원의 도입 취지와 상충된다는 사유로 반대 의견을 제시하고 있음.

3) 한국세무사회 의견임.

다. 조세에 관한 공시를 위한 장부 작성 대행 및 기업 진단 추가

□ 조세에 관한 공시를 위한 장부 작성 대행 및 기업 진단 업무를 추가하려는 개정안⁴⁾은 ① 현행법에 따른 ‘장부 작성’은 단순한 계정별 원장 작성뿐만 아니라 ‘재무제표’의 작성도 포함하고 있는 점, ② 세무사가 세무조정 등 세무서류 작성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해당 기업에 대한 재무상태에 대한 분석·검토 등의 업무, 즉 ‘진단’ 성격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점, ③ 세무사가 다른 법률에 따라 일부 기업 진단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점을 반영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참고로, 세무사는 「건설산업기본법」의 개정(2012. 1.)에 따라 건설업 재무상태 진단 업무 수행을 시작으로, 현재 각 개별법령 등에 근거하여 방송채널사용사업, 정보통신공사업, 소방시설공사업,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 등에 대한 기업 진단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동 기업 진단 업무는 주로 공인회계사가 수행하였던 업무로 현재에는 각 법령의 근거규정에 따라 세무사외에도 경영기술지도사 등도 수행할 수 있음.

4) 개정안은 현행 ‘조세에 관한 신고를 위한 장부 작성의 대행’으로 규정된 부분을 ‘조세에 관한 신고·공시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부 작성 대행 및 진단’으로 변경하고 있음.

[세무사가 기업 진단을 수행하는 업종]

기업진단업종	근거 규정
건설업	•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 제2항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9조 제2항
방송채널사용사업	• 방송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 방송법 시행규칙 제4조 제3항
정보통신공사업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16조 제4항 • 정보통신공사업 기업진단요강 제3조
소방시설공사업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 • 소방시설공사업 기업진단 요령 제4조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 제17조
산림사업법인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1항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
의약품도매상	• 약사법 제45조 • 약사법 시행규칙 제36조 제1항
문화재수리업	• 문화재수리업 등에 관한 관리지침 제12조
전기공사업	•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6조 • 전기공사업 운영요령 제19조
국방부 기술용역 적격심사	• 기술용역 적격심사기준에 관한 훈령 제7조

□ 다만, 개정안에 대하여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는 ‘공시를 위한 장부작성 업무’는 관련 법에 따라 공인회계사가 수행하는 고유직무라는 점, 재무상태 진단업무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개별 법령에서 예외적인 경우로 한정하여 해당 업무를 허용한 것으로 세무사의 고유직무에 해당하지 않고, 회계에 관한 감사·증명업무를 고유업무로 하는 공인회계사의 고유직무를 침해하는 내용으로 반대 의견을 제시하고 있고,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에서는 각 개별법에 근거하여 수십년간 현재 타자격사가 수행하고 있는 업무를 배타적인 세무사의 직무로 한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경우 해당 법률의 현행 규정과 모순되어 혼란

이 불가피하며 타자격사의 법률적인 이익이 침해될 수 있다는 사유로 반대 의견을 제시하고 있음.

- 이처럼 세무사의 고유업무 영역을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안에 대하여는 관련 직역단체의 이견이 있어 직역단체간 갈등을 유발하고 업무영역에 대한 혼란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쟁점에 대한 각 직역단체의 의견과 실태를 면밀히 살펴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결정하여야 할 사항으로 보임.

2. 세무법인 등 소속 직원이 되고자 하는 경우 세무사등록부 등록 의무화(김영환의원안)

현행	개정안
☐ 등록(제6조) ○ 세무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u>세무대리를 시작하려면</u> 기획재정부에 비치하는 세무사등록부에 등록하여야 함	☐ 등록 범위 확대 ○ 세무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u>제2조에 따른 직무를 하고자 하는 경우(세무사무소 또는 세무법인의 소속 직원이 되고자 하는 경우를 포함)</u> 기획재정부에 비치하는 세무사등록부에 등록하여야 함

* 김영환의원안 2024. 10. 17. 발의(의안번호 4755)

☐ 개정안은 세무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세무대리 업무를 시작하려는 경우 외에도 다른 세무사무소 혹은 세무법인의 소속 직원이 되고자 하는 경우에도 세무사등록부 등록을 의무화하려는 것임.

☐ 현재 세무사사무소 등에 사무직원으로 채용된 세무사 자격자는 사실상 세무사의 업무를 수행하더라도 세무사등록부에 등록되지 아니한 경우 성실의무 등 「세무사법」 위반행위가 있더라도 징계 책임을 묻기 어렵고,

공직 퇴임 세무사 자격사가 세무법인 등에 미등록 사무직원으로 있는 경우 퇴직 1년 전부터 국세청 등에서 처리한 사무와 관련된 세무대리를 퇴직한 날부터 1년 동안 수입할 수 없도록 규정한 수입제한 규정⁵⁾을 피해갈 수 있는 사각지대가 있는 실정임.

5) 「세무사법」

제14조의3(수입제한 등) ① 5급 이상(정무직 및 고위공무원단을 포함하며, 「국가공무원법」 제40조의4제1항제4호에 따라 특별승진임용 후 같은 법 제74조의2에 따라 명예퇴직한 사람의 경우 특별승진임용 전 직급이 5급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급의 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후 세무사 개업을 한 세무사(이하 “수입제한대상 공직퇴임세무사”라 한다)는 퇴직 1년 전부터 퇴직한 날까지 근무한 기획재정부, 국세청, 조세심판원 등의 국가기관이 처리하는 사무와 관련된 세무대리를 퇴직한 날부터 1년 동안 수입할 수 없다. 다만, 「국세기본법」 제59조의2에 따른 국선대리인의 세무대리 등 공익목적의 수입과

- 개정안은 세무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세무사무소 혹은 세무법인의 소속 직원이 되고자 하는 경우에도 세무사등록부에 등록하도록 함으로써, 직원인 세무사 자격자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고, 수입제한 규정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해 필요한 입법조치로 보임.

세무대리 당사자가 「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인 경우의 수입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수입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포함한다.

1. 수입제한대상 공직퇴임세무사가 세무법인 등의 담당 세무사로 지정되는 경우
2. 수입제한대상 공직퇴임세무사가 다른 세무사 또는 세무법인 등으로부터 명의를 빌려 세무대리를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등 사실상 수입하는 경우

3. 한국세무사회의 세무사 작성 서류에 대한 감리(김영환의원안)

현 행	개정안
☐ 설립과 감독(제18조) ○ 세무사의 품위 향상과 직무의 개선·발전을 도모하고, 세무사에 대한 지도 및 감독에 관한 사무를 하도록 하기 위하여 한국세무사회를 둔 ○ <신 설>	☐ 감독 강화 ○ <u>한국세무사회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세무사가 작성한 서류에 대한 감리를 할 수 있음</u>
☐ 비밀엄수(제11조) ○ <u>세무사와 세무사였던 사람 또는 그 사무직원과 사무직원이었던 사람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됨</u>	☐ 비밀엄수 대상 추가 ○ <u>한국세무사회에서 감리와 관련한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u> 추가

* 김영환의원안 2024. 10. 17. 발의(의안번호 4755)

☐ 개정안은 법령에 따라 세무사가 작성 서류에 대해 한국세무사회가 감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직무상 비밀 누설 금지 대상자에 동 감리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추가하려는 것임.

☐ 현행법은 세무사의 품위 향상과 직무의 개선·발전을 도모하고, 세무사에 대한 지도 및 감독에 관한 사무를 하도록 하기 위하여 한국세무사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국세무사회에서는 회칙에 근거하여 회원으로부터 세무조정, 성실신고확인 서류를 받아 매년 감리를 실시하고 있다는 설명임⁶⁾.

6) 2022년 귀속분 법인세 조정계산서 감리건수: 11,907건, 소득세 세무조정업무 감리건수: 11,714건, 성실신고확인 업무 감리건 수: 11,215건

□ 개정안에 따라 감리의 법적근거가 마련된다면, 「세무사법」⁷⁾에서 한국세무사회 설립목적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세무사에 대한 지도·감독에 관한 사무”의 실효성을 강화할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또한, 개정안은 비밀엄수 금지 대상자에 한국세무사회에서 감리업무를 수행한 사람을 포함함으로써 위반 시 형사 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할 수 있도록 하여 영업정보 유출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음.

□ 다만, 개정안은 감리대상을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세무사가 작성한 서류”로 포괄적으로 규정하여 해당 세무사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도 법령상 작성된 모든 서류에 대해 한국세무사회가 살펴볼 수 있는 법적 권한을 부여하는 효과가 있는데, 국가기관이 아닌 민간단체에 과도한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행정기본법」⁸⁾에 따르면 국가기관의 경우에도 자료제출과 같은 행정작용은 행정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칠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

7) 「세무사법」

제18조(설립과 감독) ① 세무사의 품위 향상과 직무의 개선·발전을 도모하고, 세무사에 대한 지도 및 감독에 관한 사무를 하도록 하기 위하여 한국세무사회를 둔다.

8) 「행정기본법」

제10조(비례의 원칙) 행정작용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

1. 행정목적을 달성하는 데 유효하고 적절할 것
2. 행정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칠 것
3. 행정작용으로 인한 국민의 이익 침해가 그 행정작용이 의도하는 공익보다 크지 아니할 것

4. 공공기관과 공익법인의 재정지출 등 관리를 위한 조사등 업무의 위탁(김영환의원안, 임광현의원안)

현 행	개정안
☐ 업무의 위촉 등(제18조의3) ☐ 공공기관은 세무사의 직무에 속한 사항에 관하여 한국세무사회에 업무를 위촉하거나 자문할 수 있음 ☐ 한국세무사회는 위촉 또는 자문을 받은 경우 그 업무를 회원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음 ☐ <신 설>	☐ 조사 등 업무위탁 근거 마련 ☐ 공공기관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설립허가를 받은 공익법인은 적절한 재정지출, 위탁사업의 운영이나 조세특례의 관리 등을 위하여 세무사에게 조사·정산·검증·확인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음

* 김영환의원안 2024. 10. 17. 발의(의안번호 4755), 임광현의원안 2024. 10. 29. 발의(의안번호 4996)

☐ 2건의 개정안은 국가 등 공공기관⁹⁾과 공익법인이 재정지출, 위탁사업의 운영이나 조세특례의 관리 등을 위하여 세무사에게 조사·정산·검증·확인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현행법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세무사의 직무에 속한 사항에 관하여 한국세무사회에 업무를 위촉하거나 자문할 수 있도록 하고, 한국세무사회는 위촉 또는 자문을 받은 경우 그 업무를 회원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9) 「세무사법」에서는 국가·지방자치단체와 그 밖의 공공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약칭하고 있음.

□ 공공기관과 공익법인의 지출 등에 관한 조사·정산·검증·확인 등의 업무를 세무사에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은 공공기관, 공익법인의 재정투명성 제고에 기여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 다만, 이는 「세무사법」 개정사항이 아니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보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3조¹⁰⁾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의2¹¹⁾에서 공공기관, 보조금사업자 등이 지출한 회계에 관한 감사업무 수행기관을 ‘회계법인’과, ‘한국공인회계사회에 등록된 감사반’으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임.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민간위탁사업 사업비 결산서 검사의 경우 「세무사법」의 개정이 없더라도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무사 또는 세무법인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최근 대법원¹²⁾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사업비 결산서 검사를 세무사

10)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3조(결산서의 제출) ①공기업·준정부기관은 회계연도가 종료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회계연도의 결산서를 작성하고, 감사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선임한 회계감사인(이하 “회계감사인”이라 한다)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공기업·준정부기관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감사원규칙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회계감사인에게 결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따른 회계법인(이하 “회계법인”이라 한다)

2.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나목에 따른 감사반(이하 “감사반”이라 한다)

11)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의2(특정사업자에 대한 회계감사) ① 같은 회계연도 중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교부받은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총액이 10억원 이상인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특정사업자”라 하며,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는 제외한다)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및 제9조에 따른 감사인이 해당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작성한 감사보고서(이하 이 조에서 “감사보고서”라 한다)를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교부한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2년 이상 계속하여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교부받은 특정사업자로서 직전 회계연도에 감사보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회계연도에 대한 감사보고서의 작성·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2) 2022추5125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2024. 10. 25.)

또는 세무법인이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가 「공인회계사법」 제50조 위반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기 때문임.

- 개정안에 대하여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는 “제3자의 검증·인증 업무는 세무사의 직무에 해당하지 않고, 이를 공공기관과 공익법인등이 세무사에게 수행하게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사유로 반대 의견을 제시하고 있음.

5. 무자격자의 세무대리 업무 취급 오인 광고 금지(김영환의원안)

현 행	개정안
☐ 업무의 제한 등(제20조) ☐ 세무대리를 할 수 없는 자는 세무대리 업무를 취급한다는 뜻을 <u>표시하거나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됨.</u> 다만, 다른 법률에서 정한 자의 업무범위에 포함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의 금지 ☐ 세무대리를 할 수 없는 자는 세무대리 업무를 취급한다는 뜻을 <u>표시·광고하거나 취급하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됨.</u> 다만, 다른 법률에서 정한 자의 업무범위에 포함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김영환의원안 2024. 10. 17. 발의(의안번호 4755)

☐ 개정안은 무자격자가 세무대리 업무를 취급한다는 뜻의 표시·광고를 금지하고 있는 현행의 구성요건을 강화하여, 무자격자가 세무대리 업무를 취급하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도 금지하려는 것임.

☐ 현행법¹³⁾은 세무대리를 할 수 없는 자는 세무대리 업무를 취급한다는 뜻을 표시하거나 광고를 할 수 없도록 하면서,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 현행법에 따른 “세무대리 업무를 취급한다는 뜻의 표시·광고”에 해당하지 않는 “오인(誤認) 우려”가 있는 정도의 표시·광고는 죄형법

13) 「세무사법」

제20조(업무의 제한 등) ① 제6조에 따른 등록을 한 사람이 아니면 세무대리를 할 수 없다. 다만, 「변호사법」 제3조에 따라 변호사의 직무로서 행하는 경우와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6조에 따라 등록을 한 자 외에는 세무사나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라 세무대리를 할 수 없는 자는 세무대리 업무를 취급한다는 뜻을 표시하거나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정한 자의 업무범위에 포함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2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0. 제20조제3항(제19조의15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표시하거나 광고한 자

정주의 원칙상 법원의 처벌 결정을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는데, 개정안은 이를 보완하여 선의의 납세자 피해를 예방하려는 것으로 표시·광고를 규제하고 있는 다른 입법례¹⁴⁾에서도 거짓 광고외에 과장 혹은 기만적인 표시·광고, 오인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구성요건으로 규정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한 점을 감안할 때 필요한 입법조치로 보임.

14) 「관세사법」

제25조(유사명칭 사용금지 등) ② 이 법에 따른 관세사,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등이 아닌 자는 통관업을 직접 수행하는 것으로 오인(誤認)하게 하는 표시를 하거나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공인노무사법」

제27조(업무의 제한 등) ② 제1항의 직무를 업으로서 행할 수 없는 자는 해당 직무를 수행한다는 표시·광고를 하거나 해당 직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행위로써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거짓·과장의 표시·광고

2. 기만적인 표시·광고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의 금지) ① 누구든지 식품등의 명칭·제조방법·성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2. 식품등을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3.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것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5.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 또는 광고

9.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등이 아닌 물품의 상호, 상표 또는 용기·포장 등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해당 물품으로 오인·혼동할 수 있는 표시 또는 광고

10. 제10조제1항에 따라 심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4항을 위반하여 심의 결과에 따르지 아니한 표시 또는 광고

6. 불법 세무대리 소개·알선에 대한 법정형 상향 (김영환의원안)

현 행	개정안
☐ 벌칙(제22조, 제22조의2)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제2조의2를 위반하여 세무대리를 소개·알선하고 그 대가를 받거나 요구한 자 ☐ 세무대리의 소개·알선 금지(제2조의2) ☐ 누구든지 세무사나 그 사무직원, 세무법인이나 그 사원·직원에게 제2조의 세무대리를 소개·알선하고 그 대가를 받거나 요구하여서는 아니 됨.	☐ 법정형 상향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제2조의2를 위반하여 세무대리를 소개·알선하고 그 대가를 받거나 요구한 자 ☐ 세무대리의 소개·알선 금지 ☐ (현행과 같음)

* 김영환의원안 2024. 10. 17. 발의(의안번호 4755)

☐ 개정안은 세무대리 소개·알선에 대한 법정형을 현행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려는 것임.

☐ 현행법은 누구든지 세무사나 그 사무직원, 세무법인이나 그 사원·직원에게 세무대리를 소개·알선하고 그 대가를 받거나 요구하여서는 아니되도록 규정하고 있고,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이는 세무대리 알선업은 세무사간 공정한 수입질서를 해칠 수 있으며, 알선업체를 통한 수입이 세무사간 지나친 가격경쟁을 유발함으로써 저가 수입에 따른 세무대리 서비스의 품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는 점을 감안한 것임.

□ 불법 세무대리 소개·알선에 대한 법정형을 상향하는 개정안은 법의 실효성을 강화함으로써 해당 범죄를 보다 억제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 다만,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점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세무대리의 소개·알선 금지 규정은 2021년 11월 「세무사법」(법률 제18521호) 개정으로 신설된 것으로, 3년 만에 법정형을 3배 수준으로 상향하여야 만큼 그간 사정변경이 있었는지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사항으로 보임.

둘째, 법률 내에서의 법정형의 균형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개정안에서 제시하고 있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는 현행법¹⁵⁾상 “세무사 자격이 없는 자의 세무대리”와 “직무상 비밀 누설”로, “세무대리 소개·알선”이 이와 같은 수준의 위법성을 갖는지에 대한 검토도 필요할 것으로 보임.

문 의 처
02)6788-5161

15) 「세무사법」

제22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세무사 자격이 없으면서 세무대리를 한 자

2. 제11조(제16조의16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19조의12제1항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자